

#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훈 의원

□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김경훈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하고 25명 의원이 찬성한 「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,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
□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의 시행(2024.05.19.)에 따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조항을 정비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을 반영해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.

- 또한, 야생조류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조례로 지정하기 위하여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  
-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  
안 제20조제2항에서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을 규정 하였으며,  
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여 야생조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.
  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